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
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성 북 구
(복지정책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4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5년 4월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고독사의 정의가 2024.2.6.자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고독사의 정의에 따라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라는 문구를 삭제함 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)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25. 2. 27. ~ 2025. 3. 19. (20일간)

2) 입법예고 방법 :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

3)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제출 없음

4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5) 비용추계 등 자료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6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 결과

가.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나.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다. 성별영향평가 결과 : 작성 제외 대상

라. 아동영향평가 결과 : 대상 아님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
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임종을 맞고,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
죽음”을 “임종하는 것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고독사”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, 병사 등의 이유로 <u>입종을 맞고,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</u>을 말한다.</p> <p>3. ~ 6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입</u> <u>종하는 것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
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단순 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제2항 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

4. 작성자

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장 이병철